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 박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73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제27호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지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5. 14.

다. 회 부 일 : 2026. 5.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안 별표 1 제27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국가재정법」 제4조는 특별회계를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동 법률안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반환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구역으로²⁾,

1) 제4조(회계구분)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산업단지 조성, 주거·문화·복지시설 구축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회계의 세입은 다른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반환공여구역 토지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등이며, 세출은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의 출자·융자 등임.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법률명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회계명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 입	◦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 반환공여구역 토지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 출연금 또는 보조금 ◦ 차입금 ◦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3. “반환공여구역”이라 함은 공여구역 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

세 출	◦ 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기반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융자 ◦ 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

다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어 칸막이식 운용에 따라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 제14조에서는 기획예산처장관의 특별회계 신설 심사 요건으로 ①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②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³⁾, 해당 기준에 따라 특별회계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

현재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이와 별도로 공여구역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 방법	사업내용	예산(억원)	
			2025년	202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 등	618	839

(2)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개정안에 따른 특별회계는 반환공여구역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을 세입으로 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세입·세출 간 연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상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동일한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⁴⁾, 안정적인 세입 확보 가능성 및 두 회계 간 세입 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제9조(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 그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위탁개발수입 및 동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

한편,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18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기획예산처는 현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 지특회계에서 이미 추진 중이므로 별도 특별회계 마련에 따른 효과성이 불분명하고,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수입은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에서 이미 사용 중인바,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이 불충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중임을 고려할 때 동일한 재원을 세입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상 지원기간이 2030년 종료 예정인 점, 미군공여구역 추가 지정이 제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은 신중한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이미 지원하고 있으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회계 마련 등은 관계부처 등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 신 설 >	27.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문 의 처

02)6788-5160